

#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 4 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11. 22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안사유

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이 조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아니한 조문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가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장이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, 종전에는 서기를 의장이 지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광체육계장으로 함(안 제7조제2항)

## 3. 본문

조례 제 호

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, 서기는 관광체육계장이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7조(간사등)①(생략)</p> <p>②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<u>의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7조(간사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<u>관광체육계장이 된다.</u>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